

제 192회 영등포구의회
2015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

2015. 12. 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106호로 2015년 11월 17일 유승용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금융기관의 대여 이자율이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 지원 대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변경(안 제8조제3항, 제9조의2제4항)
- 나. 현재 대여중인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 점포 임대자에게도 개정규정 적용(부칙 안 제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설치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5. 11. 6 ~ 11. 12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시중 은행권의 대여 이자율이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자활기금의 대여 이자 및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개정 내용은 자활기업의 사업자금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변경으로
 - 현재 이자율을 연 3퍼센트 이내 및 3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 이내로 조정하고
 - 연체이자는 연 15퍼센트에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를 적용토록 하였으며

- 기존의 자활기금 대여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적용 특례를 규정하여 적용함.
-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조성·운용하는 기금임에도 연 3%의 이자율과 연 15%의 연체 이자율로 영세한 자활기업 등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, 현재 은행권 저금리 시대에 맞게 자활지원사업 및 임대 대여 이율의 인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자활·자립을 촉진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

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[제15조의2](#)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[대통령령으로 정한다](#).

[전문개정 2012.2.1.]

■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』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설치) ① [법 제18조의3제1항](#)에 따른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[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](#)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20.>

② 기금은 해당 [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](#)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9.8.]

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<개정 2012.6.12., 2015.4.20.>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填)
2. [법 제15조제1항](#)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3. [법 제15조제1항](#)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4. [법 제18조제3항](#)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5. [법 제18조의2](#)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
6. [제37조](#)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
7. 「[지역신용보증재단법](#)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
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
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[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](#) 사업
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[국민건강보험법](#)」, 「[국민연금법](#)」 또는 「[고용보험법](#)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
[전문개정 2011.9.8.]

제37조(자활지원계획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[법 제28조](#)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, 그 계획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20.>

1.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
2.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
3.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·지원계획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해당 시·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을 해마다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20.>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로부터 자활지원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20.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[법 제28조](#)에 따른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및 이를

지원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, 자활 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5.4.20.>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[법 제20조의2제1항](#)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4.20.>

[전문개정 2011.9.8.] [제목개정 2015.4.20.]

■ 『지방재정법』

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[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](#) 및 [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](#)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[대통령령으로 정하는](#)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